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춘 곤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 춘 곤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폭염’은 공기의 온도만 고려한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령함에 있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